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23. . . (제 회)	

수 산 부 산 물 재 활 용 촉 진 에 관 한
법 률 시 행 령 일 부 개 정 령 안

제 출 자	국무위원 ○○○ (해양수산부장관)
제출 연월일	2023.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22.7) 이후 1년 동안 제도 운영과정에서 발견한 미비점과 현장 건의사항 수용을 위해 하위법령 개정 추진

3. 주요내용

가. 유해화학물질 조건부 사용 허용(시행령 제9조)

- 1) 제설제와 같이 염산 등 유해화학물질 사용이 필요한 재활용품 생산을 위해 관련 법령 준수(화학물질관리법)를 조건으로 사용을 허용해 수산부산물 재활용 범위 확대

나. 수산부산물 운반업 허가요건 현실화(시행령 별표1)

- 1) 수산부산물을 단순 운반만 하는 수집업자에게도 보관시설 구비를 허가요건으로 설정해 운반업자에 대한 과도한 규제라는 건의사항을 수용하여, 수산부산물 운반법만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보관시설 구비의무 면제

다. 소규모 업체 대상 수산부산물 중간처리업 허가요건 완화(시행령 별표1)

- 1) 환경기능사, 화공·대기산업기사 등 전문 자격증 소지가 고용이 어

려운 영세 중간처리업체(일 중간처리 용량 10톤 미만 업체)에 한해
폐기물관리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술요원 고용을 허용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 예고(9999. 12. 31. ~ 12.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호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 나. 중간처리 과정에서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7호의 유해화학물질을 사용하지 않을 것(다만, 「화학물질관리법」 제27조제5호의 유해화학물질 사용업 허가를 받은 자가 수산부산물의 중간처리를 위하여 불가피하게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라 유해화학물질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용을 허용한다)

별표 1 제1호가목1)부터 4)까지 외의 부분 중 “것”을 “것(수산부산물을 보관시설에 보관하지 않고 제8조제1항제2호의 수산부산물 중간처리업자에게 운반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으로 하고, 같은 표 제2호다목 중 “것”을 “것[다만, 1일 중간처리 용량이 10톤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사업장에서 중간처리업무에 종사하는 자 중 기술요원(「폐기물관리법」 제35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교육을 받은 기술요원에 한한다)을 1명 이상 임명할 수 있다]”으로 한다.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9조(수산물처리업자의 준 수사항 등) 법 제9조제1항에 따 라 수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이하 “수산물처리 업자”라 한다)는 법 제11조제1 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제9조(수산물처리업자의 준 수사항 등) ----- ----- ----- ----- ----- -----.
1. 2. (생략)	1. 2. (현행과 같음)
3. 수산물처리시 환경오 염 방지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3. ----- ----- --
가. (생략)	가. (현행과 같음)
나. <u>중간처리 과정에서 「화 학물질관리법」 제2조제7 호의 유해화학물질을 사용 하지 않을 것</u>	나. <u>중간처리 과정에서 「화 학물질관리법」 제2조제7 호의 유해화학물질을 사용 하지 않을 것(다만, 「화학 물질관리법」 제27조제5호 의 유해화학물질 사용업 허가를 받은 자가 수산물 의 중간처리를 위하여 불가피하게 「화학물질관 리법」에 따라 유해화학물 질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용을 허용한다)</u>

4. (생략)	4. (현행과 같음)
---------	-------------

수산물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1. 제8조제1항제1호의 수산물부산물 수집·운반업: 다음 각 목의 시설·장비를 모두 갖추는 것 가. 보관시설: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시설일 것 1)·2)·3)·4) (생략) 나. (생략)	1. ----- ----- 가. ----- -----것(수산물부산물을 보관시설에 보관하지 않고 제8조제1항제2호의 수산물부산물 중간처리업자에게 운반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2)·3)·4) (현행과 같음) 나. (현행과 같음)
2. 제8조제1항제2호의 수산물부산물 중간처리업: 다음 각 목의 시설·장비 및 인력을 모두 갖추는 것 가·나. (생략) 다. 인력: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환경기능사, 화공산업기	2. 제8조제1항제2호의 수산물부산물 중간처리업: 다음 각 목의 시설·장비 및 인력을 모두 갖추는 것 가)·나) (현행과 같음) 다. 인력: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환경기능사, 화공산업기

현 행	개 정 안
업기사· 대기환경산업기사 · 수질환경산업기사 또는 폐기물처리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을 1명 이상 배치할 것	사· 대기환경산업기사· 수질 환경산업기사 또는 폐기물처 리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 득한 사람을 1명 이상 배치할 것[다만, 1일 중간처리 용량이 10톤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사 업장에서 중간처리업무에 종 사하는 자 중 기술요원(「폐기 물관리법」 제35조제1항제1호 가목에 따른 교육을 받은 기술 요원에 한한다)을 1명 이상 임 명할 수 있다]

< 의안 소관 부서명 >

해양수산부 양식산업과	
연 락 처	(044) 200 - 5633